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총회

- 일시 : 2015년 6월 1일(월) 18시 30분
- 장소 : 광주NGO센터 자치홀

협동조합 7원칙

- 제1원칙 : 조합원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 제2원칙 :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조합원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 제3원칙 : 경제적으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 이용한다.

조합원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 제4원칙 :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협동조합이 정부나 시장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협동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제도에 의존할 경우 오히려 구성원의 자발적 선의는 줄어드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 제5원칙 : 교육과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6원칙 : 협동조합은 서로 협동한다.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이는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을 증가시킨다.

- 제7원칙 :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간접 상호성과 네트워크 상호성을 촉진시키며, 사회경제 생태계를 형성 하고 발전시킨다. 사회경제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협동조합의 사회적 위치는 커지게 된다.

창립총회 식순

[1부] 식전행사

1. 영상상영
2. 축하공연
3. 햇빛선물 나누기

[2부] 본회의

1. 추진경과보고
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3. 의사록 서명 날인인 및 회의록 작성 서기 선출
4. 의사일정 확인
5. 안건 심의
 - 가. 정관 확정 의 건
 - 나. 임원 선출 의 건
 - 다.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의 건
 -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논의 의 건
6. 폐회선언
7. 기념촬영

[3부] 소박한 식사

자료집 순서

1.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1) 설립취지문 3
2) 소개 3
2. 정관(안) 7
3. 임원선출23
4. 2015년 사업계획(안)27
5. 2015년 수지예산(안)35

1

광주햇빛발전

협동조합

1.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1) 설립취지문

모든 시민은 에너지소비자입니다. 이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와 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려온 결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에너지 위기 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에너지 생산과 더불어 저탄소사회를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광주는 태양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에 최적의 도시입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평야가 넓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에너지자립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이 되고자 합니다. 대안에너지의 생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은 자치와 자립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됨으로서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지켜나가는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실천운동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깨어있는 시민들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햇빛발전시설은 우선 광주지역 공공기관, 학교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태양광발전 등 다양한 대안에너지 발전의 터를 개발하려고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생산을 해 갈 뿐 아니라 환경교육과 홍보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시민,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과 생태적인 가치와 실천하는 삶을 가꾸어가고자 합니다.

2) 소개

□ 목적

- 핵발전과 화력발전에서 벗어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
-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지역 풀뿌리 참여 유도
- 태양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대안사회와 협동경제의 실현

□ 비전

- 300kW 규모의 햇빛발전소 설치, 연간 100가구의 전력량을 태양광으로 공급
- 시민발전소 확산, 재생에너지 교육의 장 형성

□ 경과보고

2014년 10월

- 24일 - 제1차 준비회의, 협동조합의 형식 및 발기인 확보방안 논의

2014년 11월

- 17일 - 제2차 준비회의, 햇빛발전소의 규모와 장소 논의, 워크숍 진행논의

2014년 12월

- 1일 - 제3차 준비회의, 분야별 준비소위원회 구성, 협동조합 설립 및 태양광 발전 수익 분석 논의
- 8일 - 제1차 분야별 준비소위원회 회의
- 15일 - 제2차 분야별 준비소위원회 회의
- 22일 - 제3차 분야별 준비소위원회 회의
- 29일 - 제4차 준비회의

2015년 1월

- 15일 - 제5차 분야별 준비소위원회 회의
- 21일 - 워크숍 '광주·전남 햇빛발전 협동조합 추진가능성' 개최, 제5차 준비회의

2015년 2월

- 4일 - 제1차 창립 준비소위원회 회의, 창립 준비소위원회 구성, 주1회 회의 개최
- 13일 - 제2차 창립 준비소위원회 회의

2015년 3월

- 2일 - 햇빛발전소 현장투어 '햇빛짱짱, 의기짱짱'
- 10일 - 제6차 준비회의, 햇빛강사단 구성
- 16일 - 제3차 창립 준비소위원회 회의

2015년 4월

- 3일 -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준) 출범식
- 9일 - 햇빛레터 제1호 발송
- 13일 - 제4차 창립 준비소위원회 회의, 햇빛강사단 준비회의
- 20일 - 제5차 창립 준비소위원회 회의, 햇빛강사단 1차 학습
- 23일 - '영산강 떠있기' 햇빛조합 홍보부스 운영
- 24일 - '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아이쿱식생활교육센터 강사단' 햇빛조합 설명회
- 25일 - '지구의 날' 햇빛조합 홍보부스 운영
- 27일 - 제6차 창립 준비소위원회 회의, 햇빛강사단 태양광발전소 현장투어

- 28일 - '광주NGO시민재단 월례회의' 햇빛조합 설명회

2015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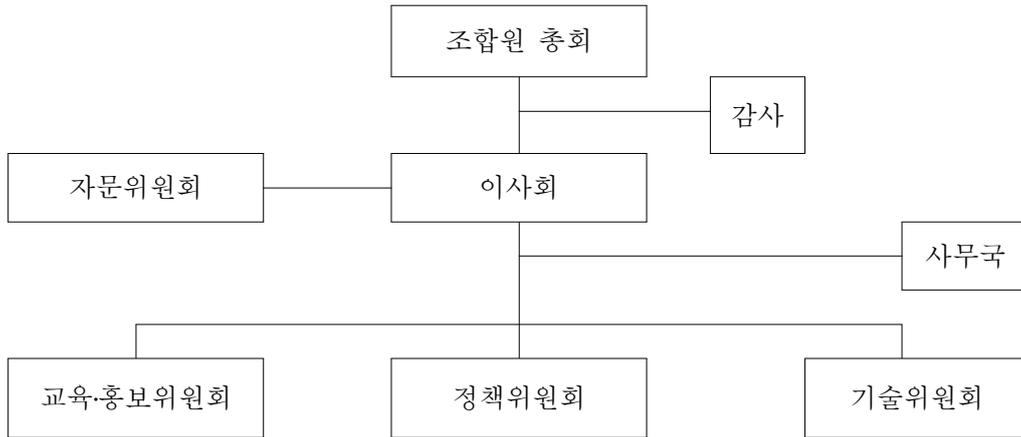
- 8일 - 햇빛강사단 2차 학습
- 11일 - '여성민우회 사무처' 햇빛조합 설명회
- 12일 - '1차 탈핵영화 공동체 상영회' 공동주관
- 13일 - 제7차 창립 준비소위원회 회의
- 14일 - 햇빛강사단 3차 학습,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책 읽기
- 20일 - 제8차 창립 준비소위원회 회의
- 22일 - 햇빛강사단 4차 학습
- 26일 - '2차 탈핵영화 공동체 상영회' 공동주관
- 27일 - 탈핵학교 '위험한 에너지 벗어나기 프로젝트' 공동주관
- 28일 - 제9차 창립 준비소위원회 회의

2015년 6월

- 1일 - 제10차 창립 준비소위원회 회의

발기인
이희한, 윤봉란, 이경희, 송형일, 박지연
준비위원회
이희한, 임수연, 김광훈, 윤봉란, 이경희, 송형일, 임낙평, 임동성, 정용식, 지준명, 이영선, 강은미, 서동휘, 양홍석, 임형승, 차인수
햇빛강사단
김정아, 강진아, 김홍숙, 기세현, 김성숙, 문상희, 조어진, 홍기혁

□ 조직표



2

정 관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위험한 핵 발전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서 발간되는 잡지나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만7세 이상인 자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이 정하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할 권리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출자금을 포함하여 총회에서 정한 기금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
2. 총회 및 그 밖의 회의에 행사에 참석할 의무
3. 조합원 교육을 받을 의무
4. 조합의 정관 및 각종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5.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 자격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 13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을 한도로 해당하는 금액
2. 제 14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을 한도로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

금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한다.

⑤ 단,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우편,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0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사업운영 및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에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6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며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100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임원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8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 한다.

제30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6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5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및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5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3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상근이사)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선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및 총회와 이사회에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에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5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에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광주광역시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정관, 규약
2. 결산서
3.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4. 총회 등 조합원 활동

제58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9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및 전력판매사업
2. 에너지 교육과 홍보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0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1조(회계연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62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3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5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4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4조 및 제25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조에 따른 손실금보전과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6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7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9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광주광역시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임원 선출

임원 선출 건(이사, 감사)

※임원 선출 근거(정관 제44조, 45조)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상근이사)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선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4

**2015년
사업계획안**

1. 3년의 비전

1) 목표

- 광주시민햇빛발전소(1호)를 시작으로 매해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광주 지역에 설치. 2017년 총 300kW로 확대
- 조합원 800명 모집. 에너지 생산과 절약, 협동조합 관련 등 조합원 교육
- 발전소 설치 운영비를 조합원 출자금으로 확보, 시민 참여형 햇빛에너지 보급

2) 기대효과

- 햇빛발전소 300kW에서 연간 38만3천kWh 전력량을 생산, 150여 가구에서 소비하는 정도의 전력소비량을 태양광 전력으로 지역에 공급
- 햇빛발전소를 활용한 지역민의 교류, 조합원 주도의 태양광 보급과 관리로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2. 2015년 사업계획안

(1) 목표

- 햇빛발전소 1호기 설치와 홍보
- 조합원 교육과 참여 활성화

(2)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사업

□ 조합원 구성

- 조합원 : 300명 목표

(만원)

설비용량	목표금액	조합원명수 (목표명수)	산출 근거
100kW	1억6천만원	305명 (300명)	$1,000 \times 5\text{명} = 5,000$ $100 \times 50\text{명} = 5,000$ $50 \times 100\text{명} = 5,000$ $10 \times 100\text{명} = 1,000$ $5 \times 50\text{명} = 250$
200kW	3억2천만원	560명 (550명)	$1,000 \times 10\text{명} = 10,000$ $100 \times 100\text{명} = 10,000$ $50 \times 200\text{명} = 10,000$ $10 \times 200\text{명} = 2,000$ $5 \times 50\text{명} = 250$
300kW	4억8천만원	815명 (800명)	$1,000 \times 15\text{명} = 15,000$ $100 \times 150\text{명} = 15,000$ $50 \times 300\text{명} = 15,000$ $10 \times 300\text{명} = 3,000$ $5 \times 50\text{명} = 250$

○ 모집 : 광주시민과 사업 진행하는 해당 동(단체)에서 조합원 모집, 회원조직이 있는 단체 중심으로 일부 모집, 설명회를 통한 모집

○ 구성 : 발전소 부지 구성원, 지역 주민 기타 타 지역 가입자

○ 의결권 :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

□ 조합원 출자금

○ 출자금 : 5구좌 이상 출자 (1구좌 = 1만원)

○ 고액 출자제한 : 5,300구좌(5천3백만원) 이하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 출자구좌 중 30% 이내로 제한)

□ 출자금 및 배당

○ 배당(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 회계연도 결산결과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음

○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탈퇴 또는 제명)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 환급 청구권 :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된 조합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가능

- 환급금 기준 : 탈퇴 또는 제명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출자금을 한도로 하는 금액

- 지급 기한 : 정기총회 후 반환

□ 시공 및 설비



□ 입지 선정

- 광주광역시, 광주시 교육청 햇빛발전협동조합 확산 및 협력을 위한 MOU체결
- 임대료 : 200만원 / 100kW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촉진지원조례)
- 1호기 발전소 후보지역(2015. 5. 22)
- 1) 광주광역시청 및 시산하 공공기관
 - 가. 광주 시의회 주차장 회랑건축물, 시청 원형 옥상



나. 빛고을시민문화관



2)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부지 및 산하기관
가. 광주광역시 청소년 수련관



나. 기타 학교부지 등 시설

(3) 전력판매사업

□ 발전량

- 발전총량 : 100kW(1호기 기준임, 최종 총량의 목표를 300kW로 함)
- 발전수익 : SMP¹⁾(한전계약) + REC²⁾(입찰, 계약)
- 가중치 : 1.5(건물 위, 3000kW이하 기준)

□ 발전소 매출분석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간전력생산량		127,750kW	127,111kW	126,476kW
판매	전기판매(한전)	15,457,750원	15,841,875원	16,235,546원
	공급인증서판매	13,413,750원	13,346,681원	13,279,948원
	총액	28,871,500원	29,188,556원	29,515,494원

※ 일평균생산시간 3.5h / SMP≒121원/kWh, 가중치 1.5 / REC≒70원

1)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가격 매년 3% 상승, 2013년 평균 SMP : 150.7원/kW

2)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12년 계약, 입찰가 고정판매(발전량×입찰가×가중치), 90원 대 평균단가 예측

(4) 에너지협동조합 교육·홍보 사업

□ 홍보사업

- 월1회 뉴스레터 제작 발송
- 협동조합 웹사이트(페이스북)운영
- 홈페이지 제작 운영

□ 햇빛강사단 운영

- 기간 : 4월~
- 개요 : 시민들에게 햇빛조합을 알리고 조합원 가입을 독려할 ‘햇빛강사단’ 양성 및 교육
- 대상 : 재생에너지와 햇빛발전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조합원
- 내용 : 신재생에너지 학습, 에너지관련 책읽기, 태양광발전 현장 투어 등

□ 우리동네 햇빛배움터

- 기간 : 6월~12월
- 개요 : 마을공동체에 재생에너지 교육과 햇빛조합을 소개하고 조합원 가입을 독려함
- 대상 : 햇빛조합에 관심있는 시민 5인 이상이 모인 곳
- 내용 : 햇빛강사단이 찾아가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

□ 빛고을 에너지농부학교

- 기간 : 6~7월
- 개요 :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을 소재로 조합원 교육
- 프로그램 :

회차	날 짜	내 용	비 고
1	6월 22일(월)	우리가 북극곰을 살릴 수 있다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2	6월 29일(월)	함께 만드는 희망,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윤봉란(광주NGO시민재단)
3	7월 6일(월)	우리마을, 에너지공동체	김소영(성대골어린이도서관 관장)
4	7월 13일(월)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하승수(녹색당 운영위원장)

□ 햇살나들이

- 일자 : 9월중
- 장소 : 부안 시민발전소(부안 등용마을)
- 내용 : 시민햇빛발전소 현장 답사, 햇빛발전 협동조합 운영원리 학습
- 일정표 :

시 간	구 분	비 고
09:30~11:00	집결/ 부안 도착	
11:00~12:30	부안시민발전소 소장 간담회	이현민 소장

12:30~14:00	점심식사	
14:00~15:30	현장 투어	
15:30~17:00	광주 도착	

□ 꼬꼬마 햇빛배움터

- 기간 : 9~11월
- 대상 : 어린이 조합원 등 햇빛발전에 관심 있는 어린이
- 내용 : 생태놀이 및 체험으로 이해하는 재생에너지

회차	날 짜	내 용	비 고
1	9월 5일(토)	나는야, 꼬꼬마 햇빛대장	그림책으로 배우는 에너지이야기
2	10월 3일(토)	우리 숲에 핵발전소가 생기면?	숲에서 하는 에너지 역할극 놀이
3	11월 7일(토)	나는 햇빛, 너는 바람	연극으로 꾸며보는 에너지 이야기

(5)에너지관련 정책사업

□ 정책 간담회 ‘광주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행정,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광주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의 방안을 모색함

□ 햇빛포럼 ‘광주 신재생에너지 관련조례 들여다보기’

- ‘태양에너지조례’,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지원조례’를 검토하고 제언함

(6)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합회 가입 및 활동

5

**2015년
수지예산안**

2015년 예산서

회계연도: 2015년도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기이월금	0		교육 홍보비	3,000,000	
사업수입	전력판매사업	4,811,916	사업비	운영비	1,000,000
	교육 홍보 참가비	2,000,000		소계	4,000,000
	소계	6,811,916		설립비용	2,500,000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2,360,000	사업외 지출	설립전 교육홍보비용	2,286,000
	지원금	1,000,000		소계	4,786,000
	소계	3,360,000			
출자금	160,000,000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용	160,000,000	
차입금	0		법정적립금	23,098	
기타수입	0		기타지출	0	
			차기이월금	1,362,818	
합계	170,171,916		합계	170,171,916	

〈산출내역〉

-수입

구분	적요
전력판매사업	2015년 11~12월분(2개월분)
교육 홍보 참가비	강좌, 현장탐방 등 조합원활동 참가비
기부출연금	준비후원금(강은미, 아이쿱생협 광주협의회, 김영철, 김정완, 송형일, 임동성, 광주환경운동연합, 나세홍, 정용식, 이경희, 국윤주, 윤봉란 이상12명)
지원금	푸른광주21협의회 동아리 지원금 '손바닥 햇빛클럽'

-지출

구분	적요
교육 및 홍보사업	조합원활동 사업비, 설명회 등
운영비	안전관리, 임대료, 보험료의 2015년 11~12월분(2개월분) 등
설립비용	창립총회 비용, 법인세, 등기비 기타
설립전 교육홍보비용	리플렛 등 홍보비, 발기인 대회 비용
시민햇빛발전소 설치사업	시공단가 1kW당 1,600,000원 기준
법정적립금	잉여금(수입-사업비-사업외지출) *10% *2/12

※참조1_설립전 수입지출비용 적요

수입부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0	차기이월금	1,074,000	
기부출연금	준비후원금 (강은미, 아이쿱광주, 김영철, 김정완, 송형일, 임동성, 환경연합, 나세홍, 정용식, 이경희, 국운주, 윤봉란 이상12명)	1,200,000	홍보 전단지	186,000
	후원금(환경운동연합)	1,000,000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1,000,000
	답사참가비	160,000	답사	
동아리 지원금 '손바닥 햇빛클럽'	1,000,000	출범식	차량운행	269,000
			식사	105,500
			소품	35,500
			자료집	175,000
			리플렛	400,000
			현수막	35,000
		기타	다과	28,000
			에너지민주주의 DVD 구입 탈핵영화제 분담금	22,000 30,000
수입	3,360,000	지출	2,286,000	
수입계	3,360,000	지출계	3,360,000	

※참조2_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3개년 예산서(안)

□ 발전소 매출분석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간전력생산량		127,750kW	127,111kW	126,476kW
판매	전기판매(한전)	15,457,750원	15,841,875원	16,235,546원
	공급인증서판매	13,413,750원	13,346,681원	13,279,948원
	총액	28,871,500원	29,188,556원	29,515,494원

※ 일평균생산시간 3.5h / SMP≒121원/kWh, 가중치 1.5 / REC≒70원

□ 협동조합 지출분석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관리비(업무추진비)	6,000,000원	6,180,000원	6,365,400원
교육홍보비	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안전관리	840,000원	865,200원	891,156원
임대료	2,000,000원	2,060,000원	2,121,800원
보험료	800,000원	824,000원	848,720원
감가상각(정액12년)	13,333,334원	13,333,334원	13,333,334원
배당금			4,800,000원
법인세(11%)	428,798원	431,862원	
총액	25,402,132원	25,694,396원	30,360,410원

* REC계약(12년) 종료 후 공공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함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TEL : 062-514-0311 FAX : 062-525-4294

이메일 : gjsuncoop@gmail.com